

- (다)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·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
- (라) 교육경력,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
- (마)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
- (2)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(1)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「국가공무원법」제70조 제1항제3호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.
- 마) 지방공무원 임용권자(지방공무원법 제6조, 교육공무원법 제58조)
- (1) 지방자치단체의 장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·휴직·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.
 - (2)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.
- 2) 권한의 위임
- 가) 임용권의 위임 등(교육공무원법 제33조)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,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,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나) 임용권의 위임(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)
- (1)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 위임한다.
 - (가) 법 제29조의2(교장등의 임용)제8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
 - (나) 교감·원감·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
 - 다) 교육장·학교장·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(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., 제903호., '21. 11. 4., 시행)

제6조(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.

1. 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·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("이하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"라 한다)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(교장·원장 제외)의 겸임 및 면직. 다만, 순회교사 겸임 및 부설학교 겸임은 제외한다. <개정 2013.11.13., 2015.7.31.><개정 2018.2.19.><개정 2020.8.18.><개정 2021.02.15.>
2.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(교장·원장 제외)의 관내전보와 근무지 지정 <개정 2013.11.13., 2015.7.31.><개정 2018.2.19.><개정 2020.8.18.><개정 2021.02.15.>
3.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(교장·원장 제외)의 휴직·복직 및 직위해제. 다만, 질병·육아·가사의 휴직과 복직은 제외한다. <개정 2013.11.13., 2015.7.31.><개정 2018.2.19.><개정 2020.8.18.><개정 2021.02.15.>